

법률자문계약서

위임인(갑) :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

수임인(을) : 법무법인 어프로치

위임인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임인 법무법인 어프로치(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행하는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특약으로 정한 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 자문을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의 한계 및 범위】

- ① 이 계약상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용역의 대상은 “갑”이 위 제1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제반 법률 문제로 한다.
- ② 위임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의 계약 체결, 기타 법률행위 및 이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자문과 지도
 2. “갑”의 소송, 화해, 조정, 중재 기타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과 지도
 3. 기타 “갑”의 업무상 필요한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과 지도
- ③ 위임 업무는 통상적인 자문 활동에 한하며, “갑”이 요청하는 법률자문이 통상적인 자문 활동을 벗어나 과도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쌍방의 협의에 따라 추가 자문료를 약정할 수 있다.

※ 통상적인 자문활동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법률 연구, 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기준 시간 : 5시간/월, 방문 상담이나 출장이 필요한 경우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 ④ “을”은 “갑”이 의뢰하는 상기 자문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갑”이 의뢰하는 자문용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이 계약으로 정하는 위임의 한계는 이 조에서 정한 업무 범위로 한정하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이나 신청사건, 조정 또는 중재 사건 등 소송대리를 비롯한 이 조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는 별도의 위임계약으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

자문업무는 “을”의 사무소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의 조합원 총회, 이사회 기타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고, 기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인 및 수임인의 의무】

- ①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 ②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의사 결정 및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권고 의견이나 조언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일체의 의사결정 또는 경영자 역할은 “갑”이 수행하며, “을”의 자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 ④ “을”이 제공한 용역 및 법률 자문과 관련 있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이나 신청사건, 조정 또는 중재 사건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임 또는 의뢰할 수 없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자문 용역을 제공한다.

제7조 【보수】

-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는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 ② “갑”이 제1항에 따른 최초의 보수를 지급함과 동시에 “을”의 위임사무처리 의무가 발생한다.
- ③ “갑”이 제1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갑”의 어떠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에 대해 책임이 없다.
- ④ “을”은 이 계약의 성립 후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처리 의무 발생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전 제1항의 보수는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제8조 【계약의 갱신】

- ① 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이 계약 종료일 1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이 계약 종료일 전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이 이 계약 종료일 1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전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경우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③ 전 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이 계약은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 ④ 이 계약 종료시 “을”은 위임사무를 즉시 중단하며, 위임사무 중단과 동시에 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갑”의 어떠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9조 【계약해지】

- ① “갑”이 이 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을”은 사전 통보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이 계약 제7조 제1항,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임사무를 종료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의한 이 계약 해지 또는 “갑”이 임의로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제7조 제1항,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400,000원/시간; 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을”이 그때까지 지급

받은 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단, 전단의 금액이 “을”이 그때까지 지급받은 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본조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부담】

-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 ② 출장 일당으로 출장 인원 1인당 1일 금 200,000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단, 서울특별시 내의 출장에 대하여는 출장 인원 1인당 1일 금 100,000원을, 제주도 등 도서지역으로의 출장에 대하여는 출장 인원 1인당 1일 금 500,000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발생시 “을”은 “갑”에게 그 취지를 사전에 통보한다. 단,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추후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을”은 이 계약에 따른 업무의 중요한 처리사항 및 그 결과를 이 계약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연락처(전화포함)의 변경사실을 “을”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갑”이 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보수지급의 지체】

- ① “갑”이 이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보관책임】

“갑”이 위임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을”은 위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장조각】

이 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손해배상】

- ①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갑”은 “을”에게 제소를 포함하여 일절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을”이 이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보수액을 그 한도로 한다(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그 최대한도를 규정한다).
- ③ 전항의 경우 “갑”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 【관할의 합의】

“갑”과 “을” 사이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11.

“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8, 201호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
최양례



수임료 입금계좌

국민은행 : 067501-04-128308

예금주 : 법무법인 어프로치

“을”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동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901호
전화:02-782-2857 팩스:02-761-2857

